

소방법령 I

NFSA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목차

Contents

제1편

소방공무원법

제1장 총칙	3
제1절 소방공무원법의 목적	3
제2절 공무원의 구분	3
제3절 용어의 정의	5
제4절 계급구분(소방공무원법 제3조)	8
제2장 인사위원회	12
제3장 임용과 보직관리	15
제1절 임용권자	15
제2절 신규채용	19
제3절 보직관리 등	70
제4절 인사기록	91
제4장 승진	101
제1절 승진의 구분 및 요건	101
제2절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115
제3절 승진대상자명부 등	141
제4절 승진심사	150
제5절 승진시험	165
제6절 특별승진	171
제7절 근속승진제도	181
제8절 대우공무원제도	186

목차

Contents

제5장 신분보장과 보건안전 및 복지	191
제1절 신분조치	191
제2절 정 년	204
제3절 보 훈	206
제4절 징 계	216
제5절 소방감찰규정	266
제6절 보건안전 및 복지	272
 제6장 교육훈련 및 복무규정 등	302
제1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302
제2절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337
제3절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346
제4절 고충심사위원회	357

1

PART

소방공무원법

제1장 총칙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장 임용과 보직관리

제4장 승진

제5장 신분보장과 보건안전 및 복지

제6장 교육훈련 및 복무규정 등

제1장 총칙

제1절 소방공무원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1. 1. 1.] 제1조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방공무원법 제1조).

제2절 공무원의 구분

1.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정무직공무원

-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2)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나.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공무원 직종 개편

- 종래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 (4개 직종으로 통합)



제3절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법」상 정의(소방공무원법 제2조)

- 가.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나.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다.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라.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정의(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가.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나.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라.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 각 시·도의 소방본부,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구조대 등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3호의 “소방기관”이 아님

3. 「국가공무원법」상 정의(국가공무원법 제5조)

가. 직위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나. 직급 :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다. 정급 :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강임 :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마. 전직 :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바. 전보 :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사.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아.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자. 직류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차. 직무등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4절 계급구분(소방공무원법 제3조)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 계급

소방총감(消防總監)	차관급
소방정감(消防正監)	1급 상당
소방감(消防監)	2급 상당
소방준감(消防准監)	3급 상당
소방정(消防正)	4급 상당
소방령(消防領)	5급 상당
소방경(消防警)	6급 상당(3년 이상)
소방위(消防尉)	6급 상당
소방장(消防長)	7급 상당
소방교(消防校)	8급 상당
소방사(消防士)	9급 상당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의 변천사

대통령령제208호 (49. 11. 15)			경무관	총 경	경감 소방감	경위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원			
대통령령제436호 (50. 12. 30)			경무관	총 경	경감 소방감	경위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 사보			
국무원령제240호 (61. 4. 15)			경무관	총 경 소방령	경감 소방감	경위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원			
각령 제1317호 개정 (63. 5. 29)	치 안 이사관	치 안 부이사관	경무관	총경 소방령	경감 소방감	경위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원			
경찰공무원법 법률 제2077호 (69. 1. 7)	치안 총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소방 총경	경정 소방 경정	경감 소방 경감	경위 소방경위	경사 소방사 소방장	순경 소방원		
지방소방공무원법 법률 제2502호 (73. 2. 8)	소방 사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사	소방원			
지방소방공무원법 법률 제2948호 (77. 2. 1)	지방 소방 사감	지 방 소방정감	지 방 소방감	지 방 소방정	지 방 소방령	지 방 소방경	지 방 소방위	지 방 소방장	지 방 소방교	지 방 소방사	
소방공무원법제정 법률 제3042호 (77. 12. 31)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공무원법개정 법률 제4992호 (95. 12. 6)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공무원법개정 법률 제 7186호 (04. 12. 30)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핵심 요약

- 공무원의 구분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공무원의 계급구조
 - 소방공무원
 - 경찰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공무원의 임용
 - 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복직, 면직, 해임 등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설 치(소방공무원법 제4조)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구성 및 운영(소방공무원임용령 제8조, 10조, 11조)

가. 인 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나. 위원장

- 1) 소방청 : 소방청차장
- 2) 시·도 : 시도 소방본부장

다. 위 원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라. 간 사

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며,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마.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기 능(심의사항) (소방공무원법 제5조)

- 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 나.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핵심 요약

- 인사위원회 설치대상
 - 소방청
 - 시·도
-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 인원 : 5인 이상 7인 이하(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소방청, 시·도
 - 소방청 차장
 - 시, 도 부단체장(행정부시장 · 행정부지사)
 - 위원
 - 소속 소방청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 간사
 - 의결정족수(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
- 인사위원회 기능
 -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 인사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제3장 임용과 보직관리

제1절 임용권자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3. 10.>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3. 10.>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

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3. 10.>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19. 1. 15.>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3. 10.>

1.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⑥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0. 14.>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31., 2019. 1. 15., 2020. 3. 10.>

⑧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시행일: 2022. 4. 15.] 제3조

1.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

가. 임용권자(소방공무원법 제6조)

1) 대통령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2) 소방청장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나. 임용권의 위임(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3, 4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1)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

가) 대통령이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권한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

나)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

2) 소방청장이 위임한 권한(임용령 3조제2~5항)

가) 소방청장이 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 권한

-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소속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나)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다. 임용권의 재위임(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4항, 제6항)

- 1) 중앙119구조본부장이 119특수구조대장에게 위임한 권한
 - 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
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
- 2) 시·도지사가 관할 내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
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 권한
 - 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
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
 - 나)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라. 임용권 행사의 제한 및 예외(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7~8항)

-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위임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신규채용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규채용 시험의 구분

가.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 1)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 2) 신규채용계급은 소방령, 소방사이다.

나. 공개경쟁선발시험(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에 선발되어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소방위로 신규채용한다.

다. 경력경쟁채용시험(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전 계급에서 채용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 1)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 된 경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한 자가 휴직기간의 만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직권면직 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5년)

-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2020.12.29.삭제)

6)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제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성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실시권)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② 삭제 <2022. 4. 5.>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10. 30., 2020. 3. 10., 2022. 4. 5.>

[전문개정 1999. 5. 10.]

2. 채용시험

가. 시험실시 원칙(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성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시험실시기관(소방공무원법 제11조, 임용령 제34조)

1) 소방청장

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2) 시·도지사의 시험문제 출제 의뢰(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3항)

가)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임용예정계급·분야 및 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공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3. 응시자격의 제한

가. 임용결격사유

1) 일반적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0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⑩「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3.>

2) 경력경쟁채용 요건 상 결격사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5.>

나. 학 력

1)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한없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

가)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관련 별표4 <개정 2022. 6. 3.>)

임용예정직무분야	응시교육과정
소방 분야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구급 분야	응급구조학과 · 간호학과 · 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화학 분야	화학과 · 응용화학과 · 화학공학과 · 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기계 분야	기계과 · 기계공학과 · 기계설계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기 분야	전기와 ·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건축 분야	건축과 · 건축학과 · 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나)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 소방위 이하

※ 특별채용의 요건 등(외국어에 능통한 자,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7항)

-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5. 10.>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9. 28.>

③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④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3. 1. 20., 2005. 3. 31., 2006. 5. 30., 2020. 3. 10.>

⑤임용권자는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 1. 20., 2014. 12. 9., 2020. 3. 10.>

⑥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0.>

[제목개정 2003. 1. 20.]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5호에 의하여 2012. 5. 31.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별표 2 및 제2항을 개정함]

다. 응시연령

- 1)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1항 별표2 <개정 2022. 4. 5.>)

계 급 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경·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 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장·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 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한다.

- 2) 소방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63조 [전문개정 2021. 3. 2.]).

- 3)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6항)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4) 응시연령의 기준일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시행일 2021. 12. 9.]

라. 신체 조건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아래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개정 2022. 6. 3.)》

부분별	합격기준
체 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마. 자격조건

- 1)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4항)
- 2) 임용권자는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5항)

바. 거주지 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9항)

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⑨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사. 경력·자격 기타

- 1)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한없음
- 2) 경력경쟁채용시험(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임용령 제15조 각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5.>

②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3. 10.>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 · 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 ⑤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⑥ 삭제
- ⑦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⑧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⑨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1986. 4. 26., 1995. 12. 29., 2006. 6. 30., 2014. 12. 9., 2020. 3. 10.〉
-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
-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면지역
- ⑩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2. 9.]

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법 제7조제2항제1호)

-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됨에 따라 퇴직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휴직 중에 있던 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
- (2) 퇴직한 날로부터 3년(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3) 이 경우의 특별채용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2항)

나)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법 제7조제2항제2호)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별표2) 채용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1. 9., 2020. 3. 13., 2023. 5. 9., 2024. 8. 14.>

《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 구분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2)(개정 2022. 6. 3.) 》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 · 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 전자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 · 전자 직무분야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소방정 · 항공 분야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 · 기관사, 1급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 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 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정비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자동차 운전분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비고 : 채용계급

1. 의사 : 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 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장 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 소방교 이하

다)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제3호)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부문·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i. 소방기관에서 별표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ii.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 특수기술부문(제15조 제4항관련,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

부 문 별	특 수 기 술
화 재 조 사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기술
통 신	유선·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소방정·소방헬기 조종 및 정비	소방정·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소방정·소방헬기의 기관정비 기술
장 비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전 자 계 산	시스템 관리·조작·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기술
구 급	응급처치기술
회 계	경리·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계급환산기준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개정 2024. 8. 14.)》

* 법7조2항3호(임용예정직 근무실적) 및 7호(경찰공무원)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구 분 계 급	국가·지방공 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공공기관 등
				초·중·고 등학교 교원	전문대학 교원	4년제대학 교원	
소방령	5급		소령	18~23호봉	13~18 호봉	11~16 호봉	과장, 차장
소방경	6급(3년 이상)		대위	14~17호봉	11~12 호봉	9~10호봉	계장, 대리(3년 이상)
소방위	6급	경위	중위·소위·준 위	11~13호봉	9~10호봉	7~8호봉	계장, 대리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3년 이상)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호봉			평사원
소방사	9급	순경	하사(병)	3호봉이하			평사원

※ 비고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해당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위 표의 교육 공무원란 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같은 영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3. 위 표의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가목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관

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제4호) : 해당자격 취득

마)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법 제7조제2항제6호)

- (1) 외국어의 수준 : 외국어 능력은 당해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7항)

(2) 임용예정계급 : 소방위 이하

바)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경위이하의 경찰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사)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도의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 지역요건 :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이거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 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 지역 또는 읍·면 지역

(2) 경력요건 : 관할지역 내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채용시기요건 : 해당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어야 한다.

(4) 채용인원의 한정 :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4. 시험의 방법 및 구분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5. 9.>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에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 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2020. 3. 10.>

가. 시험의 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 1) 필기시험 :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체력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3)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한다.
- 4)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5)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6)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7)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5. 9.>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9. 1. 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0. 12. 27.>

나. 시험의 구분(소방공무원임용령 제37조)

- 1) 공개채용시험 : 다음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나)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다)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 라)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 마) 제5차 시험 : 종합적성검사
- 바) 제6차 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2호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4. 7.>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 체력시험 · 종합적성검사 ·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개정 2017. 3. 29.>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89. 2. 28., 2015. 5. 6.>

[제목개정 2014. 12. 9.]

- 2) 경력경쟁채용시험 : 신체검사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나)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9조)

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재임용(1호),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4호)를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나)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2호), 임용예정에 상응한 근무실적이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자(3호), 외국어능통자(6호), 경찰공무원(7호), 의용소방대원(8호) : 서류전형·체력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2.29 법 제7조제2항제5호 삭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10. 12. 27.]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채용(소방공무원임용령 제38, 36조)

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방법을 준용하여 선발한다.(단, 시험의 구분 중 제2차 시험은 제외함)

나)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예의 채용

- (1)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시험방법, 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5.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가. 시험과목

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3>

가) 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나)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 비 고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의 필기시험과목표 <제44조관련, 별표5>

분야		일반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
계급	필수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선택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 · 소방위	필수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항공법규, 항공영어			
	선택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장 · 소방교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선택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사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비고

1.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2. 필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및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 다. 응급처치학개론: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개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항공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제44조관련, 별표4>

구분 계열별	시 험 과 목	
	필수과목(4)	선택과목(2)
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 비 고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44조제1호 관련, 별표6<개정 2024.8.13.>)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5)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대통령령 제348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별표6의2<개정 2024.8.13.>)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6)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44조제2호 관련, 별표9<개정 2024.8.13.>)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 및 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03. 1. 20.]

나. 출제수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5조)

- 1)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2) 소방장 및 소방교: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3) 소방사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3. 신체검사: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9.>
- ③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신설 2023. 5. 9.>
- ④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3. 5. 9.>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2.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 ·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 체력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사.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

- 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⑥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2019. 1. 15., 2022. 4. 5., 2023. 5. 9.>
- ⑦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3. 5. 9.> [전문개정 2010. 12. 27.]

6. 합격자 결정 등

가. 필기시험

- 1)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은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2항)

나. 신체검사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전 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 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4	174~ 178	179~ 186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비 고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 신체검사(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라. 종합적성검사(임용령 제46조제3항)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마. 면접시험(임용령 제46조제4항)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아래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1) 문제해결 능력
- 2) 의사소통 능력
-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 4) 협업 능력
- 5) 침착성 및 책임감

바. 최종합격자의 결정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5항)

1)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 1차시험과 제 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마)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바)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사)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 추가합격자 결정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6항)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7항)

사.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5. 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5. 6.〉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 5. 6.〉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5.〉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5. 6.〉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7.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가.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다.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라.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마.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9.>

8. 신규채용후보자의 등록 등

가. 등록대상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

- 1)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 2)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 3)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되어 교육훈련을 마친 자

나. 등록요령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 2)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 3) 경력증명서 1통
- 4)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5) 민간인신원진술서 2통(「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1. 31.〉

1. 삭제〈1994. 9. 3.〉
2. 삭제〈2006. 9. 7.〉
3. 최종학력증명서 1통
4. 삭제〈2006. 9. 7.〉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경력증명서 1통
7.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8. 민간인신원진술서 2통(「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 7. 13.〉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3. 13.〉

다. 채용후보자명부의 등록

- 1)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의 통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영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라.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1)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0조)
 - 가) 취업보호대상자
 - 나)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 다) 연령이 많은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 11., 2011. 1. 3.>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마.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18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바.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

채용후보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3. 4. 7.〉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경징계(이하 “경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9. 신규채용 순위 등

가. 임용순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19조 제1항)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나. 임용순위 예외(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9조 제2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 4) 채용후보자의 피 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다. 임용의 유예(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

1) 유예대상

- 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나)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
- 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마) 그 밖의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예신청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유예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5. 6., 2018. 5. 31.>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5.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제20조에 따라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5. 10., 2015. 5. 6.>

10. 시보임용

가. 시보임용의 의의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신규 채용자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적성 등 적격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제재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나. 시보임용의 기간

제급별로 다음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1) 소방장 이하 : 6월
- 2) 소방위 이상 : 1년

다. 시보임용기간의 계산(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2,3항)

- 1)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시보기간 중의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기간
- 2)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는 기간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제10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정할 수 있다.

라. 시보임용의 면제(소방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2항)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 가) 소방공무원으로서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 나)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마. 시보임용의 단축 및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시보임용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또는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포함)을 시킬 수 있다.
- 2)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교육훈련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 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바. 시보소방공무원의 관리(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

1) 근무상황의 지도·감독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면직 또는 면직제청(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다)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의 소방공무원 (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23. 4. 7.〉

1.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사. 임용심사위원회(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 1) 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7.]

11. 임용시기 등

가. 임용 및 면직일자 등

1) 임용일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사망으로 인한 면직일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한 것으로 본다.

3)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임용시기) ①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5. 31.>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5. 31.>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1.>

나. 임용일자의 소급금지(소방공무원임용령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1)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하여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5.3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개정 2020. 3. 10.>

1. 법 제17조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 5. 31.]

제3절 보직관리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22. 4. 5.>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4. 직제의 신설·개편·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교육훈련·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③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

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5. 6.>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19. 11. 5.>

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 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보직관리

가.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

1) 1소방공무원 1직위 부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예외를 제외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2) 전공,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한 보직부여

해당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상위계급에 하위계급자 보직부여 제한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특수자격증 소지자의 관련 직위에 보직부여

특수한 자격증 소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5) 거주지 고려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

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6) 소방관서장의 보직(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의2)

가) 시·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

7)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소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 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관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0., 2023. 3. 28.〉

8) 전문직위의 운영(소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이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제1~4호)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4) 직제의 신설·개편·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다. 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초임 소방공무원은 다음 아래의 하나에 의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가)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3. 10.>

※ 최하급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특별시·광역시·도의 소방본부·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나) 신규채용에 의하여 소방사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당해 자격관련 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경력경쟁채용 등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14. 12. 9.]

2. 전 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 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7>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 12. 29, 2016.4.5, 2021.1.5, 2023.3.28>

③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4. 7.>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2년

2. 법 제7조제2항제2호 · 제3호 · 제6호 및 제7호: 5년

④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86. 4. 26, 2014.12.9, 2020.3.10, 2021.1.5, 2023.4.7>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86. 4. 26.>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 4. 26., 2003. 1. 20., 2013. 10. 30., 2016. 4. 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 · 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 4. 5.]

가. 전보제한의 원칙

1) 일반적 전보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1항)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2항)

3)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채용된 자의 전보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3항)

가) 2년 이내 전보할 수 없는 경우(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

상법」에 따른 공무원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나) 5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는 경우(법 제7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의 전보제한(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5항)

승진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5)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관련 직위에 보직된 자의 전보제한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

가)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2년

나)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3년

나. 전보제한의 특례

1) 일반적 전보제한의 특례(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1항)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 가) 직제 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 나)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
- 다)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 라)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 마)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 시
- 바)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 사)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의 전보
- 아)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 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 차)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카)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교관으로 임용된 자의 전보제한의 특례(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2항)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 가) 기구의 개편 시
 - 나) 직제·정원의 변경 시
 - 다) 교육과정의 개편·폐지 시
 - 라)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자의 전보제한의 특례
- 가) 일반적 전보제한의 특례(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3항)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 (2)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
- (3)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자의 전보
- (4)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 (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전보

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자의 전보 제한의 특례(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4항)

최초의 직위에 임용되어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최초의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4)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6항)

가)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일

나)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다)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라)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교류임용

제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소방공무원법 제9조)

1)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 제1항)

가) 시·도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나) 시·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도간 교류하는 경우

다) 시·도 소속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류방법 및 기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 제2항, 제3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

가) 교류인원(소방경 이하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경우는 제외)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소방청장은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소방청장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인사교류 대상자의 동의·신청 및 동의 회보(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

- 1)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2)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전입·전출동의 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3) 전입·전출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소방공무원 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전출·전입요구 및 동의)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4. 파견근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제3항(이 영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 제3호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 · 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6., 2023. 10.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 ·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 제3호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 · 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5. 6., 2017. 7. 26., 2020. 3.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 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5. 5. 6., 2017. 7. 26.〉

가. 파견근무의 대상 및 기간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2년 이내
-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 1년 이내
-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년 이내
-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간
-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 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년 이내

나. 파견기간 연장

위 ‘가’의 1)호, 2)호, 3)호, 5)호, 7)호에 따른 소속소방공무원을 파견 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파견절차

위 ‘가’의 1)호 부터 3)호 및 5)호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파견받을 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라.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위 ‘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 2) 위 ‘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3) 위 ‘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21. 6. 8., 2024. 12. 31.〉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0., 2023. 10. 10.〉

[본조신설 2010. 12. 2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

6.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23. 4.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23. 4. 1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 3. 10.>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20. 3. 10.]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며 1일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

7.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소속된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10. 10., 2024. 8. 13., 2025. 7. 22.>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유산휴가·사산휴가를 가는 경우(「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해당 시·도 조례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사산휴가를 가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 31.〉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25. 1. 31.]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

8. 별도정원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0. 10.>

1. 제30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
2.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3. 삭제<2010. 12. 27.>
4.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소방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③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3. 10., 2021. 4. 27., 2023. 3. 28.>

1.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0., 2024. 8. 13., 2025. 1. 31.>>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직

- 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그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가.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 1) 1년 이상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 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나)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 다)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개월 이상)
- 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제3항(이 영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퇴직예정자의 사회적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 후의 사회적 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제

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결원보충

- 1) 1년 이상 소방공무원을 파견으로(위의 “라”의 경우는 6개월로 한다.)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소방령이하 시·도 소방공무원의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 2)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3항)
 - 가)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 나)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 다)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 3)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4항)
 - 가)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그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나)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다)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4절 인사기록

1. 인사기록의 작성

가. 인사기록 작성 보관(소방공무원법 제6조제6항)

제6조(임용권자)

⑥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나. 인사기록관리자(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등) ①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6. 3.>

- 1) 인사기록관리자 :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
-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 인사기록관리자가 지정한다.

다. 인사기록의 종류(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1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사회보서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전력조사회보서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 3. 13.]

- 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
- 나) 선서문
- 다) 신원조사회보서
- 라)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마)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 바) 경력증명서
- 사) 전력조사회보서
- 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자)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사기록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때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작성

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작성한 인사기록을 임용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전보제한 사유의 기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전보의 제한)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 전보제한기간

- (1)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 : 2년

- (2)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 : 3년
- 3) 인사기록자가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는 경우
 - 가) 분실한 때
 - 나)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다)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 라)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인사기록의 관리

가. 관리구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0. 3. 13.〉

1.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2.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인 경우: 시·도지사

② 삭제 〈2020. 3. 13.〉

③ 소방공무원의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와 최근 3년간(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제목개정 2020. 3. 13.]

-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아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가)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나)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기관인 경우 : 시도지사

나. 인사기록의 이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1) 소방공무원이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 인사기록관리자가 후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지체없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와 최근 3년간(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소방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1) 인사기록 정리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인사기록내용 변경신고

소방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인사기록 정리 및 변경보고

상기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소방공무원 인사기록 변경통보(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라.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의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1986. 12. 18.]

1) 말소대상

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등 : 9년

(2) 정직 : 7년

(3) 감봉 : 5년

(4) 전책 : 3년

나)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다)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때

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2) 말소방법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위 나) 또는 라)의 (2)의 사유로 말소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마. 인사기록의 열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3. 본인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사기록의 열람제한

인사기록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가) 인사기록관리자

나) 인사기록관리담당자

다) 본인

라)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2) 인사기록의 열람 시 준수사항

위 ‘1)의 다)와 라)’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인사기록의 수정(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의 수정금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기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 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2) 증빙서류의 확인

본인의 정당한 요구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수정하는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사. 퇴직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보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 3. 13.>

[제목개정 2020. 3. 13.]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당시 소속기관의 인사기록관리자가 따로 영구 보존한다.

아. 교육훈련성적의 보고 등(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19.>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핵심요약

- 임용의 범위
- 임용권의 위임
 - 임용권 행사의 예외
- 신규채용시험
 - 공개경쟁시험
 - 경력채용시험
 - 시험실시권자
- 임용의 제한(임용일자 소급금지)
- 공무원 계급 환산기준
- 채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 합격자의 결정
- 보직관리

제4장 승진

제1절 승진의 구분 및 요건

1. 승진임용의 구분 등

제14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승진의 의의

승진이란 하위계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이는 책임이 증대하고 보수가 높아지며, 보다 큰 위신이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소방공무원법 제14조제1항)

나. 승진임용의 방법

- 1) 임용권자 임의선발에 의한 승진임용 : 소방감 이상 계급에의 승진임용
- 2) 심사승진 : 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임용
- 3)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한 승진임용 : 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임용

- 4)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상의 특별유공자
- 5) 근속승진 : 해당 계급에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의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 상위직급의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임용하는 제도이다.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승진)

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제14조의2(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 소방공무원법 제15조(근속승진)

「소방공무원법」상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에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5. 7. 7.>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 2의2. 삭제<2020. 3. 10.>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순직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삭제<2020. 3. 10.>

②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중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7. 7.>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 3. 10.>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1. 5., 2020. 3.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신설 2020. 3. 10.>

다.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개정 2024. 8. 13.〉

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한다.〈개정 2024. 1. 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신설 1999. 9. 9.〉

④ 제1항에 따라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 1)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2)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는 경우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한다.
- 3) 소방경 이하 계급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예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

2. 승진의 요건과 제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1. 소방정: 3년
2. 소방령: 2년
3. 소방경: 2년
4. 소방위: 1년
5. 소방장: 1년
6. 소방교: 1년
7. 소방사: 1년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25. 1. 24.>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 제5호 ·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8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가)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다.나)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21. 8. 31.〉

④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 8. 31.〉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신설 2009. 3. 31., 2015. 5. 6., 2020. 3. 10.〉

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신설 2010. 12. 27.〉

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

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신설 2010. 12. 27.〉

⑧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신설 2010. 12. 27., 2018. 12. 24., 2020. 3. 10., 2025. 1. 24.〉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 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가.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1항)

가) 소방정 : 3년

나) 소방령 : 2년

다) 소방경 : 2년

라) 소방위 : 1년

마) 소방장 : 1년

바) 소방교 : 1년

사) 소방사 : 1년

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적용의 특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

가) 순직자,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적용을 배제한다.

나) 기타 특별승진의 경우 :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0. 3. 10.〉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10.〉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신설 2025. 7. 7.〉

1.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 · 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2항)

가)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1) 휴직기간
 - (2) 직위해제기간
 - (3) 징계처분기간
 - (4) 승진임용 제한기간(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i.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 ii.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iii.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3. 28.>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가.강등·정직: 18개월
 - 나.감봉: 12개월
 - 다.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

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개정 2021. 8. 31.〉

③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 5. 6.〉

④ 삭제〈2015. 5. 6.〉

⑤ 삭제〈2007. 1. 5.〉

나)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1)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휴직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3년 이내)

(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으로 인한 휴직(휴직기간)

(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됨으로 인한 휴직(휴직기간)

(라)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채용기간)

(마) 해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인정(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 i.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인 경우
- ii.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3)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에 포함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서 수습한 기간은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6)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 및 강임된 계급 이상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및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7)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8)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i. 해당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ii.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 1년을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iii.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전부

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8.>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일
2. 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 (1) 시험승진의 경우 : 제1차 시험일의 전일
- (2) 심사승진의 경우 :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 (3) 특별승진의 경우 : 승진임용예정일

나. 승진임용의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한되는 자(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순직,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은 제외)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가금 해당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성폭력 및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은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 (1) 강등·정직 : 18월
- (2) 감봉 : 12월
- (3) 전책 : 6월

다)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입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
 - 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 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 2)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승계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 3)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단축 :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0.>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2020. 3. 10.>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⑤근무성적 평정의 기준·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1. 근무성적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가. 평정대상 :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나. 평정사항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 평정결과와 활용

승진·전보·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평정결과와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마. 평정시기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4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제9조·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바. 근무성적 평정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소속		계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소방청	관·국	소방정	소속 국장	차장
	관·국 외		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시·도 소방본부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속 시·도 부시장 또는 부지사. 다만, 지방소방학교장의 경우에는 차장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방청	관·국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령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소방경	소속 과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장	
소방청	관·국	소방위 이하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위 이하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다만, 본인이 부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의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소속 부서장(과장 등)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체험관장

비고

1. “관·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차장실,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구조대장·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의 1차 평정자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소방준감으로 보하는 소방 담당 과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차 평정자는 소속 시·도의 소방본부장이 된다.

사. 근무성적의 평정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7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5. 6. 30.>

- 1) 총 60점 만점으로 평정하되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하고,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6. 30.>

1. 수: 55점 이상 ~ 60점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4. 가: 33점 미만

②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③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2)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승진임용 규정 7조, 시행규칙 제8조)

- 가) 수 : 55점이상 - 60점 : 20퍼센트
 나) 우 : 45점이상 - 55점미만 : 40퍼센트
 다) 양 : 33점이상 - 45점미만 : 30퍼센트
 라) 가 : 33점미만 : 10퍼센트

※ “가” 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또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 비율은 “양”에 가산한다.

아.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설치운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9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 3.>
- ②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
- ④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 ⑤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삭제 <2011. 1. 3.>

- 1) 설치기관 : 승진대상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둘 수 있다.
- 2) 설치목적 : 근무성적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소정의 분포비율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함.
- 3) 위원회의 구성 :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구성
- 4) 조정방법
 - 가)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소정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
 - 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 5) 재조정 요구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8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③ 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0.>

④ 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 1)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 2)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 3) 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

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4) 전보된 자의 평정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5)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의 평정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6) 교류임용된 자의 평정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시도간 또는 시도 상호간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2. 경력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9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경력평정) ①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 4. 16, 2020. 3.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1. 기본경력

가. 소방정·소방령·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소방위·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소방교·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2년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소방경·소방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소방교·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가. 평정대상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

나. 평정시기(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2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제9조·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 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3. 31.>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개정 2023. 3. 31.>

- 1)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재평정 :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

다. 평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기간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8.>

- 1)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표3)》

구분	계급	기간	월별 점수	기간별 점수			
기본 경력	소방정	3년	0.722점	기간 점수	1년 8.66	2년 17.33	3년 26.00
	소방령, 소방경	3년	0.611점	기간 점수	1년 7.33	2년 14.66	3년 22.00
	소방위, 소방장	2년	0.917점	기간 점수	1년 11.00	2년 22.00	
	소방교, 소방사	1년 6개월	1.222점	기간 점수	1년 14.66	1년 6개월 22.00	
초과 경력	소방정	2년	0.167점	기간 점수	1년 2.00	2년 4.00	

	소방령	4년	0.062점	<table><tr><td>기간</td><td>1년</td><td>2년</td><td>3년</td><td>4년</td></tr><tr><td>점수</td><td>0.74</td><td>1.49</td><td>2.23</td><td>3.00</td></tr></table>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	0.74	1.49	2.23	3.00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	0.74	1.49	2.23	3.00									
	소방경, 소방위	3년	0.083점	<table><tr><td>기간</td><td>1년</td><td>2년</td><td>3년</td></tr><tr><td>점수</td><td>1.00</td><td>1.99</td><td>3.00</td></tr></table>	기간	1년	2년	3년	점수	1.00	1.99	3.00		
기간	1년	2년	3년											
점수	1.00	1.99	3.00											
소방장	1년	0.250점	<table><tr><td>기간</td><td>1년</td></tr><tr><td>점수</td><td>3.00</td></tr></table>	기간	1년	점수	3.00							
기간	1년													
점수	3.00													
소방교, 소방사	6개월	0.500점	<table><tr><td>기간</td><td>6개월</td></tr><tr><td>점수</td><td>3.00</td></tr></table>	기간	6개월	점수	3.00							
기간	6개월													
점수	3.00													

비고: 월별 점수에 근무한 기간(월)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2)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과 동일하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5. 6. 30.>

② 삭제 <2011. 1. 3.>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경력의 조회 확인 및 재 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가) 경력평점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나)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라. 평정자와 확인자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 1. 3.]

3. 교육훈련성적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0.>

1. 소방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성적(이하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이라 한다)

2. 소방령·소방경·소방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성적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 수료 성적(이하 “관리역량교육성적”이라 한다)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성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으로 한정하며,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이라 한다)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 성적(이하 “직장훈련성적”이라 한다)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하 “전문능력성적”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소방경·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④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입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가. 평정대상 및 평정점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방정책관리자교육, 관리역량교육, 전문교육훈련,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르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성적과 그 평정점은 아래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으며,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입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1) 소방정 :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10점)

2) 소방령·소방경·소방위 : 관리역량교육성적(3점), 전문교육훈련성적(3점), 직장훈련성적(4점) 및 체력검정성적(5점)

- 3) 소방장 이하 : 전문교육훈련성적(3점), 직장훈련성적(4점), 체력검정성적(5점) 및 전문능력성적(3점)

나. 평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삭제 <2023. 3. 31.>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성적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성적을 합산하여 3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07. 1. 5., 2011. 1. 3., 2015. 6. 30., 2018. 7. 17., 2023. 3. 31.>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과정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입교육과정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직장훈련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의 성적 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④영 제1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 1. 28., 2004. 5. 29., 2007. 1. 5., 2011. 1. 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31.>

⑤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 1. 3., 2023. 3. 31.>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 3., 2014. 11. 19., 2017. 7. 26.>

1) 전문교육성적 : 다음 하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총 3점 이하의 평정점을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신입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제11조(전문교육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입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 2.5점으로 평정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3.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급구조사양성반'을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한다)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 : 과정당 0.25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시·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②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

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한다.

- 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에 해당여부를 공지하여야 한다.
- ⑤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한다.
- 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 결과를 통보할 때 교육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직장훈련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직장훈련의 성적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연 2회 정기평정,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 》

제3조(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① 직장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관서(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평정 단위 기간별로 연 2회 실시한다.

② 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각 2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교육평가를 4점 만점으로 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휴가 중인 사람
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전술훈련평가(업무수행역량 등 평가 포함)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제4조(전술훈련평가) ① 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별표 1에 따라 등급별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③ 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등 전술훈련평가를 실시하는 각 부서의 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한다.

⑤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평가는 직장교육에 대한 시험 등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소방관서장은 전술훈련평가 시 평가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교육평가) ① 직장교육평가는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근무자 : $2\text{점} \times \text{교육등 참석횟수} / \text{교육등 실시 횟수}$
2.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근무자 : $4\text{점} \times \text{교육등 참석횟수} / \text{교육등 실시 횟수}$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근무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직장훈련을 위한 교관으로서의 자질(소방경 계급에 한함), 직장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여 직장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장교육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한다.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등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

정한다.

3.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하여 평정점이 2.8점 미만인 경우에는 2.8점으로 평정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연가·병가·공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체력검정성적 :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성적을 평가한 평정점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4~5월중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에 대하여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력검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9조 및 제11조 따른 체력검정 대상자와 평정점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 조치할 수 있다.

④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다.

제7조의2(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체력검정시설 및 설비)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 시설 및 설비가 확보되지 못한 기관의 장은 인근 시설을 지정하여 체력검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연령정년 5년 미만의 소방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연도 체력검정 기간 중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 중인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질병, 신체장애 등 사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
5. 휴직(제3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경조사,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임신 중, 출산·유산)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치료 또는 요양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2항제6호의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력검정 종목 등) ① 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6개 종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1. 악력(kg)
2. 배근력(kg)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4. 제자리멀리뛰기(cm)
5. 윗몸일으키기(회/분)
6. 왕복오래달리기(회)

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호, 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9조제2항제2호는 2024년 체력검정부부터 적용하고 2024년 하반기 평정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4) 전문능력성적 :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제12조(전문능력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각 계급 별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입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소방사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5점

나.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

다.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2.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 : 각 자격증 별 1.5점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 각 자격증 별 3점

다.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평정(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라. "나"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

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

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 현장지휘관 중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

2. 응급구조사 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2개는 2점, 3개는 2.5점, 4개는 3점

③ 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소지자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자격(면허)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에 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한다.

④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배치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 부서 배치 또는 해당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소방헬기 조정 및 정비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항공공장정비사
2. 소방정 조정 : 1급~6급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다. 평정자와 확인자 : 경력평정의 경우와 같다.

4. 가점 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 11. 18.〉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훈련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

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개정 2011. 1. 3.〉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개정 2011. 1. 3.〉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개정 2021. 11. 18.〉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개정 2020. 3. 13.〉

⑥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신설 2021. 11. 18.〉

⑦ 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11. 18.〉

⑧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개정 2021. 11. 18.〉

[본조신설 2003. 1. 28.]

평정기준(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2조) :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입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산능력·외국어능력·자격증·학위취득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가점의 경우 승진임용예정계급에 포함하고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1) 전산능력 가점평정(소방청 예규 제4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3조)

자격증 종류	평정 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0.5	0.3

※ 비고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함

2) 직무관련 자격증 및 가점평정 점수 기준(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4조)

자격의 종류	배점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정보통신기술사 ○ 1급 ~ 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초급·중급·고급·전략 현장지휘관	0.5
○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자동차정비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정보처리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소방사다리차 운행사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구급전문교육사 1급, 선임 조종교육증명	0.3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제1종 대형운전면허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조종자(1종, 2종)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구급전문교육사 2급, 초급 조종교육증명	0.2

※ 비 고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평정은 소방장 이하에 한함.

나.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1) 언어능력 가점평정(소방청 예규 제4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5조)

배점기준	배점		0.5점	0.3점	0.2점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630점 이상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670점 이상	570점 이상
	영 어	TOEIC	900점 이상	800점 이상	600점 이상
		TOEFL IBT	102점 이상	88점 이상	57점 이상
		TOEFL PBT	608점 이상	570점 이상	489점 이상
		TEPS	850점 이상	720점 이상	500점 이상
		New TEPS	488점 이상	399점 이상	268점 이상
		TOSEL(advanced)	880점 이상	780점 이상	580점 이상
		FLEX	790점 이상	714점 이상	480점 이상
		PELT(main)	466점 이상	304점 이상	242점 이상
		G-TELP Level 2	89점 이상	75점 이상	48점 이상
	일본어	JLPT	1급(N1)	2급(N2)	3급(N3, N4)
		JPT	850	650	550
	중국어	HSK	9급 이상	8급	7급
		新 HSK	6급	5급-210점 이상	4급-195점 이상
	제2외국어 (일본어 · 중국어 포함)	서울대 · 한국외국어대 검정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 2)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내외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한국어판 증명서 사본이나 한국어판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이하에 한한다.(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6조)

다.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7조)

- 1) 임용권자는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 2)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대상 기관·부서·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3)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 4) 제1항에 따른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8조)

- 1) 소방관련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
- 3)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 4) 우수실적 가점평정은 아래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구 분	우 수 성 적		제안채택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중앙 우수제안	자체 우수제안
배 점	2.0점 이내/회	0.5점 이내/회	◦ 금상 : 1.0 ◦ 은상 : 0.8 ◦ 동상 : 0.6 ◦ 장려·노력상 : 0.5	◦ 특별상 : 0.5 ◦ 우수상 : 0.3 ◦ 우량상 : 0.1

※ 비고

1. 시·도 단위 우수성적은 해당 계급에서 총합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내의 공동 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4인 이내가 합산하여 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하게 가점부여 가능

마. 인사교류 가점평정방법(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9조)

- 1) 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인사교류로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2) 제1항에 따른 가점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125점씩 가점 평정한다.
- 3)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 4)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가점평정 방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 1) 가점평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당해계급에서 취득 또는 근무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 2) 가점평정의 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각 호의 최대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0.5점
 - (나)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0.5점
 - (다)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2.0점
 - (라)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2.0점
 - (마)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3.0점
- 3)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때와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의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 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5. 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8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

② 삭제 <2020. 1. 3.>

[제목개정 2020. 1. 3.]

가. 제출대상 서류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 경력평정표, 교육훈련성적평정표

나. 제출기일 등 : 평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

제3절 승진대상자명부 등

1.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개정 2024. 1. 2.>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5.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개정 2024. 8. 13.〉

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소방청장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
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도지사
4.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

③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신설 1986. 4. 26., 2015. 1. 6.〉

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개정 2023. 3. 28.〉

가. 작성대상 : 승진요건을 갖춘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나. 작성권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제2항)

1) 소방청장

가)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나)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다)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 소속 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

- 3) 국립소방연구원 : 소속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
- 3) 시·도지사 :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4)의 경우를 제외한다)
- 4)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 :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다. 작성 기준일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 에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4항, 시행규칙 제19조)

라. 작성기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며,(승진임용규정 제11조 제1항)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도서·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마.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성적 산정(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9조)

1)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 가)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산정

- 가) 소방령 및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해당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산정

- 가) 소방령 및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 해당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 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text{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text{점})/2$
- 나)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text{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text{점})/2$
-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5)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산정

- 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text{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text{점})/2$
- 나)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text{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text{점})/2$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 6)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산정
- 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나)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7) 각 평정별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동점자의 순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4.>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승진대상자명부의 총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하나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2조)

가.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나.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다.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라.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 위 순위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3. 승진대상자통합명부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

가.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4. 승진제외자명부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1. 3., 2023. 3. 31.>

1. 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 영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 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5.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가. 조정사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개정 2023. 3. 28.>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퇴직자가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5.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7.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8.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1. 4. 16, 1994. 8. 25, 2023.3.28>
- ③ 삭제<2023. 3. 28.>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 2) 퇴직자가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5.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7.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8.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10)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나. 조정기준일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

6.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3조 제3항)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7.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발생일(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4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가. 명부작성 시 :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 명부조정·삭제 시 : 명부의 조정·삭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 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5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①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명부작성 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명부조정·삭제 시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승진심사

1. 승진심사 횟수 등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07. 1. 5., 2021. 8. 31.>

[전문개정 1986. 4. 26]

연1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6조)

2. 승진심사 대상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1. 11. 23.]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은 아래표에 따른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인 사람의 수(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인 사람의 수
1 ~ 10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5배수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50명

3. 승진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 1. 5.>

1. 삭제 <2010. 12. 27.>
2.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승진심사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한 승진심사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제한) 해당자와 동규정 제36조 제1항(부정행위자 조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3조)

4.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가. 승진심사위원회(소방공무원법 제16조)

-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소방청
-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방공무원법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

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할**(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8. 13.〉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제4호 및 제5호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4.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5.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 [전문개정 2015. 1. 6.]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시도 소속 소방정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의 소방정이하로의 승진심사

3)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소방정이하로의 승진심사

4)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경 이하의 승진심사

5)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에의 승진심사

다. **구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7조·18조·제21조)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0. 3. 10.〉

② 삭제〈2010. 12. 27.〉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 7. 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7. 7.〉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고, 제4항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신설 2025. 7. 7.〉

⑥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0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7. 7.〉

⑦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7. 7.〉

⑧ 제4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신설 2025. 7. 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4항의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신설 2025. 7. 7.〉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개정 2020. 3. 1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3. 10.〉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3. 10.〉

1. 소방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삭제〈2015. 5. 6.〉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12. 28.〉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25. 7. 7.〉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소방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신설 2025. 7. 7.〉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가)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7조)

가)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위원 : 승진심사대상자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 위원장 :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

나) 소방청, 소방청 소속기관,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 :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 위원장 : 위원 중 설치기관장이 임명

4) 간사 및 서기 : 간사 1인, 서기 약간인

5) 위원의 중복임명 제한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0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 제4항(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7. 7.〉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1) 회의소집 :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의진행 및 의결 :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승진임용 심사를 위한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준수사항(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 승진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개시와 동시에 「소방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8.〉

②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0. 7.〉

④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서약서 제출

승진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개회와 동시에 승진심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입제한 및 외부와의 연락 금지

승진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심사수칙의 주지

간사는 승진심사 개시 전에 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라) 행위, 언어의 제한

간사와 서기는 당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승진 심사의 실시

가. 심사요소(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4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0. 12. 27.>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1) 근무성과(객관평가) : 현 계급에서의 근무·경력·교육훈련성적평정 등
- 2) 경험한 직책(객관평가) :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위원평가)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나. 평가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4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객관평가와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 3.]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객관평가”와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예규) 제9조(승진심사 평가기준)

- ① 객관평가 점수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총 점수로 한다.
- ② 위원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발전성·국가관·청렴도 등에 대하여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 후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환산점으로 계산한다.
- ③ 객관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환산점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 점수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별표1] 사전심의 단계 점수산정 세부기준

1. 심사 항목 및 배점

가. 객관평가 점수 : 승진대상자명부 상의 총 점수

나. 위원평가 점수 : 직무수행능력·발전성·국가관·청렴도 등에 대하여 위원평가점수 부여

다. 위원평가 환산점 : 위원평가 점수를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환산점 계산

라.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 객관평가 점수 + 위원평가 환산점

2. 위원평가 점수 기준

가. 각 위원별로 다음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추어 심사대상자별 점수 부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심사대상자 분포비율	20%	20%	20%	20%	20%

※ 심사대상자 분포비율 인원 분배

2명 일때	→	수(5점) 1명						가(1점) 1명
3명 일때	→	수(5점) 1명			미(3점) 1명			가(1점) 1명
4명 일때	→	수(5점) 1명	우(4점) 1명		미(3점) 1명			가(1점) 1명
	또는	수(5점) 1명			미(3점) 1명	양(2점) 1명		가(1점) 1명
5명 일때	→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6명 일때	→	" 1명	" 2명		" 1명	" 1명		" 1명
	또는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7명 일때	→	" 1명	" 2명		" 1명	" 2명		" 1명
8명 일때	→	" 2명	" 1명		" 2명	" 1명		" 2명
9명 일때	→	" 2명	" 2명		" 2명	" 1명		" 2명
	또는	" 2명	" 1명		" 2명	" 2명		" 2명
10명 일때	→	" 2명	" 2명		" 2명	" 2명		" 2명
11명 일때	→	" 2명	" 3명		" 2명	" 2명		" 2명
	또는	" 2명	" 2명		" 2명	" 3명		" 2명
12명 일때	→	" 2명	" 3명		" 2명	" 3명		" 2명
13명 일때	→	" 3명	" 2명		" 3명	" 2명		" 3명

나. 심사대상자별로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산(A)

다. 위원평가 환산점

$$\text{위원평가 환산점} = \text{각 위원이 부여한 합산점수(A)} \times \text{보정지수}(\beta)$$

※ A는 각 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합산점수임

※ 보정지수(β) 산정

- 객관평가 점수 편차 : 심사대상자 중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
- 보정지수(β) 산정

$$\text{보정지수}(\beta) = \frac{\text{객관평가 점수 편차(최고점 - 최저점)}}{(\text{평가위원 수} - 2) \times 3.9}$$

※ 보정지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계) = 객관평가 점수 + 위원평가 환산점

다. 심사자료(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1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1조(승진심사자료) 영 제16조에 따라 승진심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삭제 <2011. 1. 3.>
6.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8. 역량평가·다면평가 결과(해당 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 8의2. 청렴도조사 결과
9.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 1) 승진심사계획서
-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 4) 개인별 인사기록
- 5) 승진심사 사전심의표
- 6)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 7) 역량평가·다면평가 결과(해당 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 8) 청렴도조사 결과
- 9)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라. 심사절차 및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5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 1. 3.>

- ②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7. 7. 26.>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3. 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 ③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 1. 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가)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사전심의표에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나) 가)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승진심사 사전심의 위원점수 집계표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

다) 나)의 심사환산점수와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 2)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에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 예규 제32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별표2](승진심사 절차 및 방법)

1. 1단계 사전심의

- ① 간사는 심의위원에게 다음의 심의자료 제시
 - 인사기록 조사표(별지서식), 평가 점수기준(별표1), 자기역량기술서, 청렴평가 등
- ② 각 위원별 위원평가 실시
 - 평가 점수기준(별표1)의 “2번”에 따라 위원별로 심사대상자 점수 부여
- ③ 위원장은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대상자별로 집계(합산)
 - ※ 집계시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산
- ④ 위원장은 보정지수(β)를 이용 심사대상자별로 위원평가 환산점 계산
- ⑤ 위원장은 “승진심사 사전심의 위원점수 집계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확인시키고 위원평가 환산점 의결(1차 의결)
- ⑥ 환산점 의결(1차 의결) 후 간사는 객관평가점수를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평가 환산점 의결(1차 의결) 이전에 객관평가점수 비공개 철저 유지

※ 1차 의결 이전에 객관평가점수 공개시 무효(→위원회 재구성)

- ⑦ 위원장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산정(객관평가점수+위원평가 환산점)
- ⑧ 위원장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고득점 순으로 2배수 내외(별표3)를 최종 결정하고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를 작성하여 각 위원 확인 후 의결(2차 의결) → 본심사에 회부

2. 2단계 본심사

- ① 사전심의에서 회부된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상위계급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예정자 최종 결정
- ② 승진임용예정자 및 임용순위는 심사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

마. 승진심사결과의 보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5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 4. 26.>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승진심사의결서
- 2) 승진심사종합평가 결과서
-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6. 심사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6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나.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7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③심사승진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86·4·26>

- 1)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 2)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 3) 심사승진임용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제5절 승진시험

1. 시험실시 기관

가. 소방청장(소방공무원법 제11조)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시험실시권의 위임(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0. 3. 10., 2021. 11. 23.>

③ 삭제 <2007. 1. 5.>

[전문개정 1986. 4. 26.]

[제목개정 2020. 3. 10.]

1) 중앙소방학교장

- 소방령·소방경·소방위로의 시험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2) 시·도지사

-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다. 시험문제 출제의 의뢰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응시자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0. 3. 10., 2021. 11. 23.>

③ 삭제 <2007. 1. 5.>

[전문개정 1986. 4. 26.]

[제목개정 2020. 3. 10.]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그 해당 계급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

가. 제1차 시험 실시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3. 시험시행 및 공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1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소방청장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20. 3. 10.>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가. 시험실시권자 : 소방청장,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중앙소방학교장, 시·도지사)

나. 공고 :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

다. 응시서류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0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3.]

- 1) 응시하고자 하는 자 :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
- 2) 소속기관장 :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

라. 시험의 실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삭제 <2010. 12. 27.>
 ④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⑤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1) 시험의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2조)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나) 제2차 시험 : 면접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2) 단계별 응시제한

가)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1차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필기시험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8조)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별표8)

구 분	과목수	필기시험과목
소방령·소방경 승진시험	3	행정법, 소방법령Ⅰ·Ⅱ·Ⅲ, 선택1(행정학, 조직학, 재정학)
소방위 승진시험	3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소방장 승진시험	3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소방교 승진시험	3	소방법령Ⅰ, 소방법령Ⅱ, 소방전술

※ 비고

1. 소방법령 Ⅰ :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소방법령 Ⅱ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법령 Ⅲ :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소방법령 Ⅳ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5. 소방전술 : 화재진압·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4) 시험의 합격결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4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삭제 <2010. 12. 27.>

③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 · 교육훈련성적 · 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 2.>

가) 제1차 시험 :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나) 제2차 시험 :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 교육훈련성적, 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성적의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 최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라) 동점자의 합격자결정 :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6조)

5. 시험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가.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7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 하되,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6절 특별승진

1. 승진대상 및 계급의 범위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공적이 있거나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소방공무원법 제14조)

가. 순직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

제14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승진임용규정 제38조제1항제5호)
- 2) 소방위 이하 순직공무원 중 2계급 특별승진 대상 :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 제2항)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5. 7. 7.〉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의2. 삭제〈2020. 3. 10.〉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순직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삭제〈2020. 3. 10.〉

②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중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7. 7.〉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 3. 10.〉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

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1. 5., 2020. 3.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신설 2020. 3. 10.〉

나.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1)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정려 공적자

-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업무유공특진)

-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 i.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소방청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지사, 소방서장)이 인정한 자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

* 각종 재난의 예방활동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명확하고 확실한 자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

- ii.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료 중앙부처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

- iii. 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 iv. 기타 소방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사람

*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에서 주관·후원하는 각종 대회·시상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

*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의 주요시책 등의 추진에 공헌실적이 있는 자 (소방령 이하에의 승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규정 제4조(훈령))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4조(특별승진 요건) 업무유공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실시한다.

1.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소방청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지사, 소방서장)이 인정한 자
2. 각종 재난의 예방활동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명확하고 확실한 자
3.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로 중앙부처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4.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에서 주관·후원하는 각종 대회·시상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5.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의 주요시책 등의 추진에 공헌 실적이 있는 자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

3)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하는 공적자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승진의 특례 및 제한

가. 특별승진에의 특례

- 1) 순직한 경우의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시행령의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및 승진임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업무유공특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의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내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특별승진의 제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0. 3. 10.〉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10.〉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신설 2025. 7. 7.〉

1.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 1) 38조1항의 1호 “청렴, 봉사, 직무정려”, 2호 “업무유공특진”, 3호 “창안등급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공적은 해당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하며,

해당 소방공무원의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 이상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2) 20년이상 근속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의 제한 사항

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시행령 6조의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신임교육, 지휘역량 교육 미이수로 인한 제한사유는 제외)이어야 한다

나) 재직기간중 중징계 처분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i.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각 호의 징계 사유

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ii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iv.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v.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다)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아래각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고, 특별승진임용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i.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ii. 재직 중 형법 129~132조(뇌물, 사전·사후 수뢰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iii.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승진임용 횟수 및 시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27.]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0조)

4. 특별승진심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개정 2020. 3. 10.>

②「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시·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개정 2024. 8. 13.>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7. 7.>

④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2025. 7. 7.>

⑤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7.>

가. 특별승진심사의 관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2조)

-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본부장·지

방소방학교장

- 2) 시·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

나.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5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7. 8.〉

②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 또는 특별승진임용의 추인은 찬·반투표로써 한다.〈개정 2025. 7. 8.〉

③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8.〉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2011. 1. 3.〉

1) 공적사항 등 관련자료 제출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승진심사대상 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방법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서 하며,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3)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승진심사의결서

나)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

다)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

다. 특별승진심사의 생략(소방공무원법 제14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2조 3항)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중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 하는 경우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절 근속승진제도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상계급 및 재직년수(소방공무원법 제15조)

가.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 : 소방사에서 4년 이상 근속자

나.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 : 소방교에서 5년 이상 근속자

다.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 : 소방장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라.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 : 소방위에서 8년 이상 근속자

※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기준 및 절차

가. 근속승진 기준 및 절차(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의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근속승진) ① 법 제15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0. 3. 10.〉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1. 8. 31.〉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1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 8. 31.〉

④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6. 27.〉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개정 2024. 6. 27.〉

⑥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3. 3. 28.〉

⑦ 임용권자는 인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

⑧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 3. 28.〉

[전문개정 2011. 12. 21.]

- 1) 근속승진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과 같다.
- 2)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3)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 4) 임용권자는 위의 3)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5)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 6) 기타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소방청예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소요기간) ①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 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는 생략한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근속승진임용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및 제23조제3호에 따라 제한한다.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

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3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력평정점은 소방위 경력 12년을 만점(35점)으로 하며, 소방위 경력월수에 0.2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방장 이하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의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소방위는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근속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다.

②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의 시기는 매년 5월 1일, 11월 1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없다.

제7조(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충원)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계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⑭ 임용사항 중 "임용과정"란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표기(예시: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속승진 정원관리)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의하여 상위 계급으로 근

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 된 사람이 해당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 된 인원만큼 근속승진 된 계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차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 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계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③ 근속승진 된 사람이 타 기관 전출, 승진 등으로 해당 계급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계급별 정원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보고) 삭제

부칙 <제95호, 2024.01.0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절 대우공무원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 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

③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3. 10.〉

[본조신설 2008. 12. 2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개정 2024. 6. 20.〉

1. 소방정 및 소방령: 7년 이상
2.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 4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1. 16.〉

[본조신설 2008. 12. 30.]

1. 대우공무원 선발

가.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3조, 시행규칙 제36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의 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신임교육을 졸업하지 못함. 관리역량교육과정 수료하지 못함.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함)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1) 소방령·소방정 : 7년 이상
- 2) 소방사~소방경 : 4년 이상

나. 대우공무원 근무기간 산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대우공무원 근무기간의 산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의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산정방법 따른다.

다. 선발 절차 및 시기(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0.]

1) 대우공무원 대상자 결정 및 발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2. 대우공무원 수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3. 13.>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0. 3. 13.>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0.]

가. 대우공무원 수당지급(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7. 7.>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나. 대우공무원 수당 감액지급(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 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대우공무원수당 감액 지급표[별표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 (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 (연봉월액의 6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 (연봉월액의 4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다. 대우공무원 수당 소급지급(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대우공무원 자격상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 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0.]

가. 승진임용되는 경우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나. 강임되는 경우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핵심요약

- 승진의 요건
 - 승진소요근무연수
- 승진의 제한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평정
- 승진대상자 명부작성
- 승진의 종류
 - 심사승진
 - 시험승진
 - 특별승진
 - 근속승진
 - 대우공무원제도

제5장 신분보장과 보건안전 및 복지

제1절 신분조치

1. 신분보장의 원칙

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8조)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24. 12. 31.>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2. 11.]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2. 2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가”의“2)”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결격사유에 해당(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 3. 28.]
-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직권면직

가. 직권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0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1. 삭제 <1991. 5. 31.>
- 2. 삭제 <1991. 5. 31.>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7.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개정 2008. 3. 28.>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3항(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5)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나. 직권면직시 징계위원회의 의견참작 및 동의(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임용권자는 위의 1)~6)에 해당하는 사람을(「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후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에 의한 직권면직일(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6항)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한 날로 한다.

4. 휴 직

가. 휴직의 사유 및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신설 2012. 12. 11., 2020. 1. 29.〉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3. 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1) 직권휴직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1년(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로 한다.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 임기제공무원은 상기 휴직사유 중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직권휴직이 가능하다.

2) 청원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라)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 기간(다만, 민간 기업이 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나) 국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 2년 이내

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마)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바)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 이내

※ 임기제공무원은 상기 휴직사유 중 “따”에 해당하는 경우만 청원휴직이 가능하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소방공무원법

제24조의2(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6.]

나. 휴직의 효력(국가공무원법 제73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3)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5. 직위해제

가. 직위해제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1965. 10. 20.]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 3. 11.>]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사람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나. 직위해제자의 대기명령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직위해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직위해제처분

상기 직위해제 사유 1)호와 2)호 ~ 4)호가 경합하는 경우 2)호 ~ 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자의 직위부여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6. 강 임

가. 강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

· 제40조의2 · 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
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할 수 있다.

-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
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 2) 본인이 동의한 경우

나. 강임된 공무원의 우선임용

- 1)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승진시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후
보자명부의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
조의4)
- 2)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
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 3)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
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소방
공무원임용령 제55조)

다. 강임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54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4조(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절 정년

제25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소방공무원 정년의 구분(소방공무원법 제25조)

가. 연령정년 : 60세

나. 계급정년

- | | |
|--------------|--------------|
| 1) 소방감 : 4년 | 2) 소방준감 : 6년 |
| 3) 소방정 : 11년 | 4) 소방령 : 14년 |

2. 계급정년의 계산(소방공무원법 제25조 제2항)

- 가.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근속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포함한다.
-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계급별 정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각에 따른다.
-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다. 소방청장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정년퇴직 발령(소방공무원법 제25조 제5항)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제3절 보훈

제18조(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1. 근 거(소방공무원법 제18조)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2. 신청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59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9조(보훈) ① 법 제18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0. 30.]

「소방공무원법」 제18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

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청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급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1. 26.>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8.]

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11. 9. 15.>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 9. 15.>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⑦ 삭제 <1994. 12. 31.>

⑧ 삭제 <2000. 12. 30.>

[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 1)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녀 :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 3) 부모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대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보상금 지급 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한다.

-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3)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지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4. 대 상

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개정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개정 2015. 12. 22.〉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개정 2015. 12. 22.〉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전문개정 2011. 9. 15.]

- 1)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2)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3)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개정 2023. 3. 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1)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2)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 3) 재해사망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4)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4절 징 계

1. 징계의 사유 등

가. 징계의 사유

1)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8.>

③ 삭제 <2021. 6. 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3. 28.]

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감사원법상의 징계사유(감사원법 제32조)

감사원법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그 밖의 징계위원회등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파면 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면 요구를 받아 집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訴請) 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그 결정 결과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그 징계 의결이나 소청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非違)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⑪ 제1항·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징계부과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21. 6. 8.>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본조신설 2010. 3. 22.]

[종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3으로 이동 <2010. 3. 22.>]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위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징계사유의 승계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 징계 및 징계 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0. 3. 22.]

- 1)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 부가금 부과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2)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상기 1)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 3)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기 1)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79조)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다. 공무원신분의 배제 여부에 따라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교정징계(강등, 정직, 감봉, 견책)로 구분하고, 징계양정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가. 중징계

- 1) 파 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징계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 2) 해 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징계로서 처분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 3) 강 등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4) 정 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나. 경징계

- 1) 감 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3분의1을 감하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승진 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 2) 견 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 훈계, 경고, 계고, 엄중주의, 권고 등은 문책의 성격을 가진 교정수단인 점에서 견책과 유사하나 징계의 종류는 아니다.

3. 징계위원회

가. 징계위원회의 관할(소방공무원법 제28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8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3. 10. 10.〉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나.소방청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 또는 소방령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 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10. 10.〉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3. 10. 10., 2024. 8. 13.〉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 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1. 10. 14., 2023. 10. 10.〉

[전문개정 2020. 3. 10.]

1) 국무총리 소속하의 징계위원회

: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가)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나)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다)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3) 「소방공무원법」제28조제2항의 “소방기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가)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나)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4) 시·도 징계위원회

: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

5) 「소방공무원법」제28조제3항의 “소방기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의 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나. 위원회의 구성(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3. 10., 2021. 10. 14., 2022. 3. 15.〉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

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9. 3. 31., 2022. 3. 15., 2023. 6. 13.〉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09. 3. 31., 2014. 4. 15., 2015. 7. 24., 2020. 3. 10.〉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9. 3. 31., 2011. 1. 28., 2013. 9. 17.,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1. 10. 14., 2022. 3. 15., 2023. 6. 13., 2023. 10. 10.〉

1. 소방청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법률 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 4. 15.〉
-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2. 3. 15., 2023. 10. 10.〉
-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2. 3. 15.〉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두는 징계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1) 위원장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2)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
 - 가)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나)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의 임명(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

계급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법정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자(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항, 제5항)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가) 소방청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나)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5) 간사의 임명(소방공무원 징계령 제6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 4. 15.>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4. 15.>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 4. 15.>

[제목개정 2014. 4. 15.]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몇 명을 둔다.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 관련 사건의 관할(소방공무원 징계령 제3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개정 2024. 8. 13.〉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②제1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14. 4. 15.]

- 1)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가 동일한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
 - 가) 그 중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나)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2) 위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는 징계사건으로
 - 가) 소방서간의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나) 시·도간의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4. 징계의 절차

가. 징계의결의 요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0.>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2.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15.>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 가. 비위행위 유형
 -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0. 10.>
- 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0., 2014. 4. 15.,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 1) 징계의결 요구권자(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 가)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청장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준감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
 - 나)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 2) 징계의결 요구방법(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 가)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 (2)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 (3) 아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 (가) 비위행위 유형
-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 (7)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4항)
- 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

나. 징계사건의 통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 ②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

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0., 2014. 4. 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 처분등”이라 한다)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제목개정 2014. 4. 15.]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 1)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2)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상기 “(1)”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가)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다)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3)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4)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징계사유를 통보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다. 징계의결기한(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2020. 3. 10., 2023. 10. 10.>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4. 15., 2020. 3. 10.,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1)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상기 “1)”의 징계의결등 기한에서 제외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4. 4. 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⑥ 징계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15.>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 1. 20., 2014. 4. 15.>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제목개정 2003. 1. 20., 2014. 4. 15.]

라.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2조)

- 1)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래 2)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기 “(1)”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4)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5)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6) 징계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7)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8)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심문과 진술권(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④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3. 12.>

⑦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3. 12.>

1) 징계심의대상자 및 관계인의 심문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진술의 기회부여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증인심문신청 및 채택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요구자 등의 진술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의 사실조사 등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바. 피해자의 진술권(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2)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10. 10.>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8. 6.]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 징계위원의 제척 및 기피(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 6. 2.〉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혐의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⑥ 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 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 8. 4., 2014. 4. 15., 2017. 6. 2.〉

1) 징계위원의 제척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징계위원의 기피

가)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한 징계위원의 보충임명

가) 징계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임명 하여야 한다.

나)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한 징계위원의 보충임명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1)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결정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자.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심의·의결(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훈령) 제8조 제1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 가.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 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 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 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 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 나.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功績)
 - 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4.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징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 ①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 ②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 ③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 ④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다)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 ①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 ②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功績)
- ③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④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라)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2) 의결방법(소방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2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의견분립시 양정결정 방법 예시

징계위원 7인이 출석하여 파면 1명,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3명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정직 3월로 의결됨

3)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의결서 명시사항(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의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가)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 나) 증거의 판단
- 다) 관계 법령
- 라)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 마)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차. 징계의 양정

- 1) 징계양정 기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14. 4. 15.]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이 정한다.

2) 징계의결등 요구기준(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결등 요구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행위자(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자는 제외한다)

가.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자(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 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 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5)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징계의결등 요구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 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 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 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 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 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 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별표 5와 같음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카.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 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른 내부결속 저해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거.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음주운전	별표 1의2와 같음			
나.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3과 같음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교

-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 나목을 적용한다.
-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다른 공무원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5. 제7호 라목의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 - 해임
2)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 - 정직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 비고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2. 성희롱				
가. 반복·상습적이거나 피 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3. 성매매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나. 가목 외의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비교

-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2호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6. 제3호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제10조 관련)

업무의 성질 \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 3	3 1	2 2	1 4
○ 단순 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
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교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3.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횡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신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6) 징계의 감경(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행위자가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5. 감독자가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행위자에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①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 ②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 ③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 ④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나) 감독자(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 ②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 ④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 경합 및 가중사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수종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행위자(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감독자 문책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카.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의 감경·가중 의결(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결서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

징계양정 감경기준(제12조 관련)

구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1	파면	해임
2	해임	강등
3	강등	정직
4	정직	감봉
5	감봉	견책
6	견책	불문(경고)

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 면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수종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행위자(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않음)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야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

- 4)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 제5항)

타. 징계의결의 통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正本(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0.〉

[전문개정 2014. 4. 15.]

[제목개정 2023. 10. 10.]

-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 2) 징계의결서의 원본·정본·사본 구분(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등 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등 의결서의 원본 :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3.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 :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4. 징계등 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 징계등 의결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가) 징계의결서의 원본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나) 징계의결서의 정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써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다) 징계의결서의 사본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라) 징계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징계의결 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파. 징계의 집행

1) 집행기관(소방공무원법 제29조)

제29조(징계 절차)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4.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가)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나)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2) 집행방법(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징계처분등)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해야 한다.〈개정 2003. 1. 20., 2009. 3. 31., 2014. 4. 15., 2020. 3. 10., 2023. 10. 10.〉

②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처분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1983. 8. 4., 2009. 3. 31., 2014. 4. 15., 2023. 10. 10.〉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10. 10.〉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가. 다른 공무원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신설 2023. 10. 10.〉
-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23. 10. 10.〉
-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3. 10. 10.〉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신설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가) 징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된 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징계등 처분을 집행한다.

나)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3) 집행결과와 보고 및 통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임용권자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 심사청구(소방공무원법 제26조)

제26조(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거. 재심사 청구(소방공무원법 제29조)

제29조(징계 절차)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4.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4.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너. 행정소송의 피고(소방공무원법 제30조)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 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제5절 소방감찰규정

소방감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5. 4. 29.]

1. 목적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복무기강확립 및 인사행정 등 각급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감찰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소방감찰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속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3. 감찰활동의 구분

소방감찰규정

제4조(감찰활동의 구분) 감찰관의 감찰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예방감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와 직무실태를 관찰하여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소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진하게 하는 계획된 감찰활동

2. 감찰조사

감찰대상자의 비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사실을 조사·규명하여 시정 대책을 건의하는 행정조사

3. 특별감찰

소방기관의 장이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시기 또는 업무 분야, 소방기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활동

4. 교류감찰

소방기관의 장이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소방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는 활동

5. 청문수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애로와 건설적인 의견을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청문하여 소방행정 운영에 반영하는 활동

가. 예방감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와 직무실태를 관찰하여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성 요인을 제거하고, 소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진케 하는 계획된 감찰활동

나. 감찰조사

감찰대상자의 비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증거에 의거 명확하게 사실을 조사규명하여 시정대책을 건의하는 행정조사

다. 특별감찰

감찰대상자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기강·사기·능률·민원·교육·회계·예방·진압 등 특정업무를 단기간에 검열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지휘관의 불시 감독 수단

라. 청문수리

소속직원에 대하여 애로와 건설적인 의견을 수시 서면 또는 구두로 청문하여 소방행정 운영에 반영하는 활동

4. 감찰관의 자격요건

소방감찰규정

제5조(감찰관의 자격요건) ① 감찰관은 감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감찰)관리자 또는 감사(감찰)실무자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청렴 검소하고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
 3. 근속 3년 이상인 사람
 4. 기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감찰관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가. 감찰관은 감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감찰)관리자 또는 감사(감찰)실무자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해야한다.

- 1)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 2) 청렴 겸손하고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자
- 3) 근속 3년 이상인 자
- 4) 기타 해당 기관장이 감찰관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찰업무를 할 수 없다.

-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5. 감찰관의 임무

소방감찰규정

제7조(감찰관의 임무) 감찰관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방비위 근절대책 추진 및 지도·감독
2. 공직기강 문란행위 및 감찰대상자 조사·처리
3. 민원, 진정, 투서, 정보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부정행위 조사·처리
4. 소속공무원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
5. 특명사항 조사 처리
6. 소속공무원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
7. 비위 제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8. 소방업무의 자체 감사지원 등

가. 소방업무의 자체감사

나. 소방비위예방대책 추진 및 지도 감독

다. 기강문란 및 비위관련자 조사·처리

라. 민원, 진정, 투서, 정보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부정조사 처리

마. 소방공무원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

바. 특명사항 조사 처리

마. 소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6. 감찰활동의 범위

소방감찰규정

제11조(감찰활동의 범위) 감찰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2. 소방청 소속 소방기관의 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 할 수 있다.

가.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등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나. 시·도 소방본부장 등은 소방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7. 감찰관 자료 제출 요구 등

소방감찰규정

제14조(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감찰관은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2. 증거품 및 자료제출
 3. 현지조사의 협조요구
 4. 진술서 제출과 출석요구
- ② 소속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가.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나. 증거품 및 자료제출 지시

다. 현지조사의 협조요구

라. 진술서 제출과 출석요구

제6절 보건안전 및 복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약칭:소방공무원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0. 4. 1.] 제1조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소방공무원 복지법 제1조, 제2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중앙·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 나. 수련원, 보육시설
 -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나.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다.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라. “소방관서”란 중앙·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마.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바.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1)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 2) 수련원, 보육시설
- 3)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시설[1항])에 부수되는 시설

사.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국가 등의 책무(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소방관서의 장 및 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 제5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제3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자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시행일 2020. 4. 1.]

가.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포함사항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연도별계획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라.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마.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정기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정기실태조사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 ②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 ③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 ④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⑤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⑥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다.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6.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 7. 17., 2020. 3. 10.>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나. 각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1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4. 18.>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9. 12. 10.>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를 둔다.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소방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경우 위원 수는 3명 이내 위촉 가능하며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라.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7.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9. 12. 10.>
-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 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③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7. 7. 17.>
- ④ 소방공무원의 진료 시작 시기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6.>

가.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지정된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소방공무원의 진료
-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 3)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법 제16조)
-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다. 소방공무원의 진료 시작 시기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② 소방청장은 시·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가. 소방청장은 시·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 7조)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업무

- 1) 소방공무원의 진료
 -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다.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9.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
2.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3.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②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평가
2.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3.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지역 특성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4.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5.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6.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련 기록 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7. 그 밖에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④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2.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 상태의 확인
3. 그 밖에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나.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

2)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3)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다.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평가
- 2)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3)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지역 특성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4)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 5)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 6)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련 기록 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 7) 그 밖에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업무

라.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 2)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 상태의 확인
- 3) 그 밖에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4.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 ③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 ④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제9조의3(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3.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②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 ③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 ④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10. 소방보건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소방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상담
2.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4.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분석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운영

③ 소방보건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결과, 질병의 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소방보건의는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 11. 20.>

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방보건의의 자격·권한·선임방법 등

- 1)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2) 소방보건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결과, 질병의 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의하여야 한다.
- 3) 소방보건의는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 소방보건의의 직무

-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상담
- 2)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 3) 소방업무환경측정 등(법 제15조)

※ 소방업무환경측정 등(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5조)

- ①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소방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분석(법 제16조)

※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

-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운영

11.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나.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다.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라.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2.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3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 나.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3. 역학조사 및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7조, 제1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7조(역학조사)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歴)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가.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나.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소방관서의 장은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歴)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4.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 제1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건강진단(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6~19조)

제16조(건강진단의 실시)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과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진단의 구분)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제18조(건강진단의 방법 등) ①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 방법과 횟수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④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제19조(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제18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직무 배치, 배치 유예,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퇴직할 때까지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제18조제3항 관련)

1. 특수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의 일반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같음하되, 다음 표의 검사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기관	검사항목
내분비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대사산물	혈중 납, 혈중 카드뮴, 분진(기타 광물성, 석면), 벤젠
감염성 질환	HBs Ag, HBs Ab, anti-HAV IgG,, 수두, 홍역, 잠복결핵

* 감염성질환 예방접종의 방법과 횟수

1) 항원·항체가 음성일 시 예방접종 실시

- B형 간염 항원 및 항체 모두 음성인 경우 0, 1, 6개월에 B형 간염 예방 접종 실시
- A형 간염 IgG 항체가 음성인 경우 0, 6개월에 A형 간염예방접종 실시

2) 신규 입사 전 접종 권장사항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성인이후 접종 경력이 없는 경우 1회 접종
- MMR(홍역-볼거리-풍진) : 1967년 이후 출생자 한하여 2회 접종

3) 감염성 질환관련 검사항목에서 특이사항 발견 시 소방관서 보건담당자가 관리 대상으로 선정 후 사후관리

4) 별첨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검사는 관련 업무 배치 전 소방관서장이 필요 시 실시

나) 정기건강진단

유해인자		검사항목	비고
기본검진		일반건강진단 항목, 문진표(계통별), 신체진찰	분진검사포함
소음		순음청력검사(0.5-6 kHz), 고막운동성검사	
심혈관질환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측정값)	
		당화혈색소 및 심전도* 24시간심전도,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초음파**	* 40세부터 매년 **50세 1회, 택1
뇌혈관질환		경동맥 초음파	50세, 55세, 60세 각 1회
유기 화합물	벤젠	소변(유콘산)	
중금속	납	혈중 납, 신경계통 문진	
	카드뮴	혈중 카드뮴	
근골격계		경추 MRI, 요추 MRI, 어깨 MRI, 무릎 MRI	40세, 50세, 60세 각 1회 1부위 선택
교대근무 & 암발생 위험		수면장애 : 문진 및 상담	
		혈액암 :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검사 위암 : 위내시경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자궁경부암(여성) : 자궁경부 세포검사 간암 : 간초음파, 알파태아단백(AFP) 유방암(여성) : 유방초음파 폐암 : 저선량 폐CT 전립선암 : 전립선특이항원(PSA)	<국가암검진 연계>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 : 만 40세 이상(만 50세 이상부터는 국가암검진 연계) * 대장내시경 5년 주기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2년 주기, 여성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B·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 <국가암검진 비연계> 혈액암 : 전연령, 매년 유방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여성 ※ 유방촬영 : 국가암검진 연계 개별 실시 폐암 : 만 50세 이상, 2년 주기 전립선암 : 만 50세 이상, 매년
감염성 질환		C형간염(anti-HCV) 매독(VDRL 또는 RPR)	
정신건강		정신건강 및 직무스트레스 체크리스트	정신건강 설문조사로 같음(단, 필요시 진행)

-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수시건강진단

-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작업성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실시한다.

실시 시기	검사항목	비고
대형화재 발생 후 또는 유독물질 발생 현장 노출 후	호흡기에 대한 문진과 진찰 단순흉부방사선촬영 벤젠 : 소변 유콘산 중금속 : 혈중 납, 혈중 카드뮴 메타헤모글로빈(MetHb) 기타 필요한 검사	노출 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함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시	의사 상담 및 진찰 필요시 신체부위별 단순방사선촬영, 초음파, MRI	업무관련 근골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 발생 위험 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평가도구와 상담 필요 시 심리상담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2인 이상의 사망 사고 어린이 사망 사고, 소방대원(동료)의 사망 사고 기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사고를 경험한 경우
감염성 질환에 노출 시	각 감염원별 노출 후 관리에 준한 검사	감염원별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검진 실시
헬기탑승자 검진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준용	연 2회
특수활동 종사자	자각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면담 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을 참고하여 추가검사 가능	잠수업무 종사자, 화학적인자 노출 종사자, 상황, 전산, 통신 등의 종사자 방사선 또는 방사능 취급자

*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도 자각증상이 있을 시, 의사와 면담 후 필요검사 실시 가능

** 유해인자(감염인자 포함) 노출이 의심되는 대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다른 대원에게 유사한 증상 및 징후가 발생할 경우 집단질병발생 예방을 위하여 의사와 면담 후 필요한 검사를 시행 할 수 있음

2. 정밀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후 직업성 관련증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표적질환	검 사 항 목	비고
고혈압	혈압, 24시간 혈압 검사	
당뇨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관상동맥질환	심전도,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	
부정맥	24시간 심전도	
뇌혈관질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Brain MRA)	
호흡기계질환	흉부방사선촬영, 폐기능검사, 폐 전산화단층촬영	
수면장애	수면각성활동량 검사(sleep actigraph), 수면다원검사	
근골격계질환	단순방사선촬영,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검사	
대장암	조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암	조직검사	
혈액암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기타 암	전립선초음파, 신장초음파, 방광초음파	

* 소방공무원 다빈도 표적질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 참고표(검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거되지 않은 검사도 실시 가능)



핵심요약

- 공무원의 신분보장
 - 보건안전, 복지제도
- 공무원의 퇴직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휴직과 직위해제
 - 직위해제 기간
- 보훈제도
- 징계
 - 징계사유와 종류
- 소방감찰 제도의 운영현황
- 소청심사제도 활용
- 보건안전의 제도
- 복지제도
- 퇴직 사회적응제도

제6장 교육훈련 및 복무규정 등

제1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 목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3.>

[시행일 2024. 8. 14.]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

2. 정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 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4. 8. 13.]

3.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3. 중앙소방학교의 장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전면개정 2023. 3.28.]

가. 설치목적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5)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소방청 기획조정관
-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3) 중앙소방학교의 장
-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의결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기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교육훈련의 기회) ①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 1)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를 관장하는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교육과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 등(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 등)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1]

《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 (제5조제3항 관련) 》

구분		대상	방법
1. 기본 교육 훈련	가. 신입 교육	-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 임용이 예정된 사람 -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 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입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
	나. 관리 역량 교육	승진후보자(「소방공무원승진임용 규정」 제2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승진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이 받는 교육 훈련 소방위 계급 (소방위 계급으로의 승진 후보자를 포함한다.) 소방경 계급 (소방경 계급으로의 승진 후보자를 포함한다.) 소방령 계급 (소방령 계급으로의 승진 후보자를 포함한다.)	
	다. 소방정책 관리자 교육	소방정 계급 (소방정 계급으로의 승진 후보자를 포함한다.)	
2. 전문교육훈련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소방령 이하	직장훈련으로 실시,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
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	모든 계급	직장훈련으로 실시
4. 자기개발 학습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 연구 활동	모든 계급	

※ 비고

해당 계급에 임용되기 직전 또는 해당 계급에서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급의 관리역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교육훈련 계획(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교육훈련계획) ①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소방공무원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지침

- 1) 교육훈련의 목표
 -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가) 다음 연도의 계획수립 및 통보

소방청장	다음 연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지침 통보(11월30일까지)	→	시·도지사 교육훈련기관장
시·도지사	(정책 및 지침참조)다음연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12월31까지) 제출	→	소방청장
중앙교육훈련기관장	(정책 및 지침참조)다음연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12월31까지) 제출	→	소방청장
지방교육훈련기관장	(정책 및 지침참조)다음연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12월31까지) 제출	→	시·소지사(경유) → 소방청장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개방(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교육훈련기관 간 협업·개방) ①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도지사와의 먼저 협의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
2. 교육훈련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3. 교과목, 교재, 교육훈련용 콘텐츠 등 교육훈련과정의 공동 개발·활용
4. 교수요원,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상호 활용
5.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
6. 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상호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도지사 및 먼저 협의해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마.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①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위와 관련한 확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바. 교육훈련비의 지급(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3. 3.28.]

사. 의무교육(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의무복무) ①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입교육(이하 “신입교육”이라 한다)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제3항의 별표1 가목에 따른 신입교육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간의 2배)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아.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입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4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전면개정 2023. 3.28.]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입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4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2]

〈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제12조 관련) 〉

구분	산정기준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X $\frac{1}{2}$
2.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X $\frac{(\text{의무복무 개월수} - \text{근무 개월수})}{\text{의무복무 개월수}}$
3.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전액

※ 비교

1.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2. 국외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 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추가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 개월수} - \text{근무 개월수})}{\text{의무복무 개월수}}$$

5.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 · 기간 ·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 · 기간 · 방법 등은 다음 별표와 같다. (소방청훈령 제 312호 시행 2023. 3. 31.)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별표]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제2조 관련) 〉》

구분	교육훈련과정명		교육훈련 대상	교육 훈련 기간	교육훈련기관		
					중앙소방 학교		지방 학교
					공주	천안	
기 본 교 육	신입 교육	소방장 이하 공채·경채자 과정	소방장 이하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52주 이내	◎	◎	
		소방위 이상 경채자 과정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12주 이상	◎		
		소방간부 후보생과정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자	52주	◎		
	관리 역량 교육	소방위과정	소방위 및 소방위 승진후보자	1주 이내	◎	◎	
		소방경·소방령과정	소방경·소방령 및 소방경·소방령 승진후보자	2주 이상	◎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소방정 및 소방정 승진후보자	24주 이내	◎		
전 진 단 위 교 육 과 정	자 격 취 득 관 련 과 정	현장 지휘관	초·중·고급지휘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름	◎	◎	
			전략 지휘관		◎		
		화재 대응능력	1급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2급			◎	
		인명 구조사	1급·2급	「인명구조사 교육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전문		◎		
		응급 구조사	1급·2급	「응급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	
		화재 조사관	-	「화재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2급			◎		
	그 밖 에 과 정	특성화교육과정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계획에 따름	반일 (4시간) 이상	◎	◎
		심화과정				◎	
		기초과정					◎
민·관 교육 훈련	(民)대형대상, (官)중앙부처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계획에 따름		◎		
	(民)중·소형대상, (官)지자체소속					◎	

비 고

1. 시·도 소방본부는 매년 영 제3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임교육 소방장 이하 공채·경채자 과정, 관리역량교육 소방위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및 민·관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중앙119구조본부는 매년 영 제3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조분야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3. 기본교육(소방간부후보생과정 제외) 교육훈련기간은 상기 범위 내에서 매년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4. 교육훈련기간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기간과 실무수습 또는 관서실습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5. 전문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1개 과정당 교육훈련시간 7시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教授要目), 기간, 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면개정 2023. 3.28.]

-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가)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나) 교육훈련과정

다)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教授要目)·기간·대상 및 인원

라)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마) 교재 편찬계획

바)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사)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1)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 소방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소방기관장등”이라 한다)는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은 그로 인한 업무의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장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기관장등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

해야 한다.

⑤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 1)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 2)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은 그로 인한 업무의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3) 소방기관장 등은 교육훈련개시 10일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 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 5)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교육훈련성적의 평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教授要目), 기간, 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면개정 2023. 3.28.]

- 1)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평가는 각 교육훈련기간의 평가지침 또는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전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 등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3)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 교육 수료 및 졸업(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수료 및 졸업) ① 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람일 것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일 것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

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 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면개정 2023. 3.28.]

1) 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2주이내의 교육과정(신임·지휘역량 교육과정 제외)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가)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람일 것

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일 것

3)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참조]

마.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퇴교처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퇴교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 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 다) 수업을 매우 게을리 한 경우
 - 라)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마)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바)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사)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2)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퇴교 처분하는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3)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가) ~ 바)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된다 인정될 때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바. 수료 또는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방기관장 등은 제17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 1) 소방기관장 등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2)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

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3)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교수요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교수요원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 강의 또는 훈련
2. 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3. 교육훈련과정의 설계·운영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4.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지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3. 3.28.]

가. 교수요원의 겸직임용(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및 제32조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 및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 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2)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담당할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면개정 2023. 3.28.]

- 1) 교수요원은 담당할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가)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라)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마)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바)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

다. 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강의, 훈련, 교육운영 등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수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3. 3.28.]

-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강의, 훈련, 교육운영 등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3)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수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중앙소방학교 교수 근무실적·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라. 교수요원의 전보(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교수요원의 전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으로 2년의 보직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

마. 교육훈련시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교육훈련시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3]

〈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 (제26조 관련) 〉

구분	교육훈련시설
1. 옥내 훈련시설	가. 전문구급 훈련장
	나. 수난구조 훈련장
	다. 화재조사 훈련장
	라. 소방시설 실습장
	마. 가상현실 훈련장
2. 옥외 훈련시설	가. 소방종합 훈련탑
	나. 산악구조 훈련장
	다.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라. 실물화재 훈련장
	마. 대응전술 훈련장
3. 교육지원시설	가. 업무시설
	나. 강의시설
	다. 관리시설
	라. 편의시설
	마. 주거시설
	바. 저장시설

※ 비고

1. 교육훈련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 시설기준 및 보유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비고의 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춘 훈련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별 보유장비기준은 각 교육훈련기관이 모두 갖추어야 한다.

바.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입교 · 퇴교 · 상벌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 · 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교육생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 · 위촉 ·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 개정 ·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가) 입교 · 퇴교 · 상벌에 관한 사항
- 나)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 · 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 다)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 라) 제28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 마) 수탁교육생에 관한 사항
- 바) 교육훈련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 사) 교수요원 등의 선발 · 위촉 ·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1) 가), 나)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 개

정·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 생활관 입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전면개정 2023. 3.28.]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임용될 사람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 전면개정 2023.3.28.]

7. 직장훈련

가. 직장훈련의 실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 1)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2)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3)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나. 직장훈련시간 총량 관리(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직장훈련시간 총량 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전면개정 2023. 3.28.]

- 1)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 2) 이와 관련하여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규정」소방청 훈령 제369호 시행 '24.7. 1. 참조]

다. 직장훈련 계획(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
2.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훈련
3. 신규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4.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5.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서별 · 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전면개정 2023. 3.28.]

1) 소방기관의 장은 시달된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기본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가)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
- 나)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훈련
- 다)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 라)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 마)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부서별 · 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라. 직장훈련담당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전면개정 2023. 3.28.]

소방기관의 장은 직장훈련을 담당하기 위하여 직장훈련 담당관을 지정해야한다.

-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
- 2)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훈련
- 3)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마.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4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4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 계획 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4.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3. 3.28.]

직장훈련담당관은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직장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 4) 기타 직장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8. 위탁교육훈련

가. 위탁교육훈련의 실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위탁교육훈련의 실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3. 3.28.]

-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2)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3)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4) 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나. 위탁교육훈련계획(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 계획
6. 훈련비 명세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3. 3.28.]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인원
-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 5)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 계획
- 6) 훈련비 명세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7)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다.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훈련에 필요한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전면개정 2023. 3.28.]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3) 훈련에 필요한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
-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 6)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라. 훈련과제의 부여(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9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9조(훈련과제의 부여)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마.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0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거주지,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도, 훈련결과,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④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3. 3.28.]

- 1)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2)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

귀해야 한다.

- 3)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거주지,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도, 훈련결과,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4)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가)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나)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 5)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바. 복귀명령(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1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1조(복귀명령)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면개정 2023. 3.28.]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 1) 제4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 2)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사. 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2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 또한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아. 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3조(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자. 준용(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4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4조(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절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 목적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2.>

[시행일 2025. 7. 22.]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에서의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4.>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3. 복무자세(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 자세)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가. 소방공무원은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나. 소방공무원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4. 여행의 제한(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장거리 여행 신고의무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가.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6. 교대제 근무(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교대제 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4.>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가.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나. 소방기관의 장은 2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7. 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8. 안전사고의 방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가.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9. 공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10.>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본조신설 2019. 12. 24.]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 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0. 포상휴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4.>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1. 복무점검 등(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2(복무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점검하고,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소방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복무점검 또는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무점검이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시정·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2. 18.]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점검하고,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 대하여 복무 점검 또는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12. 준용(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20. 3. 10.]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제3절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1. 목적(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시행일 2023. 7. 27.]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착용수칙(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2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2조(착용수칙)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제복착용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복장과 용모단정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제복

가. 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3.>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1) 제복구분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2) 제복의 종류

가)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나)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다) 소방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 라) 계급장의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 마)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 바)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 3)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제복의 착용 기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4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신설 2019. 11. 28.>

④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 1)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하기된 “4.” “나.”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정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 3)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기 “2)” 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급기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지급기준)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 1)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별표 7과 같다.
- 2)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지급품의 재지급(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 1)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 2)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마. 제복의 지급방법(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1)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 2)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3)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바. 제복 수요의 보고(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복의 착용 구분

가. 제복의 차림(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9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 18.〉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나. 정장(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0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27.〉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7.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 및 119배지
 8.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1) 정장의 차림새

가) 정모

나) 정복 상의

다)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라)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마) 단화

바)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사)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 및 119배지

아)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자)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2) 정장을 하는 때

가)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다)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라)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다. 근무장(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1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1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2. 4.15.>

1. 근무모 또는 정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7.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8. 넥타이(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한다),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2. 12. 1.>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소방특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1) 근무장의 차림새

가) 근무모 또는 정모

나)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 점퍼

라)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마) 단화

바) 계급장

사)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아)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2) 근무장을 하는 때

가) 평상시 내근을 할 때

나) 소방특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다)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라)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라. 기동장(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2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8.>

1. 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4. 단화 또는 기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7. 허리띠(천) · 이름표 등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8.>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목개정 2013. 1. 18.]

1) 기동장의 차림새

- 가) 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 나)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 다)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 라) 단화 또는 기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 마) 계급장
- 바)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 사) 허리띠(천) · 이름표 등

2) 기동장을 하는 때

- 가)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 나)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 다)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 라)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마. 특수장(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3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8.>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1) 특수장의 차림새

가)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나) 특수복

다) 단화 또는 기동화

라) 계급장

마)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바) 허리띠(천), 이름표 등 기동모 또는 교관모(교관만 착용한다)

2) 특수장을 하는 때

가)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나)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5. 사복의 착용

가.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4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나. 그 밖의 제복(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5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5조(그 밖의 제복)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13.>

- 1)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 2)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절 고충심사위원회

1. 설치기관(소방공무원법 제27조)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소방청

나. 시·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4.>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심사관할 및 구성(소방공무원법 제27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0. 3. 10., 2021. 10. 14.>

②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22. 1. 25.>

③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④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1.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⑦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⑧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본조신설 1983. 5. 19.]

[제목개정 2018. 5. 15.]

[시행일: 2022. 1. 25.]

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

- 1)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
- 2)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 3)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찰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 4) 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 5)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 6)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한다. <신설 2019. 4. 16.>

(가)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다) 그 밖에 성별·종교·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2)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 3)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4)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가)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5)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6)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7) 결정 :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0조)
- 8) 관할 :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3. 고충심사대상(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4. 고충심사청구(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4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가.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나.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5. 보완요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회피 및 기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6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6조(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나.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고충심사절차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②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분(副本)을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답변 내용을 보충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가. 결정기한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청구서 부분 송부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분을 송부해야 한다. 청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심사일의 통지 등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

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전문개정 2018. 5. 15.]

가.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나.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9. 증거제출권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9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9조(증거제출권) ①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참고인의 소환
2. 참고인에 대한 질문
3.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
-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④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신청한 참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⑤ 고충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한 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4.]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0. 결정서작성 및 송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가.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1. 고충심사결과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2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④ 인사혁신처장 또는 설치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관의 장은 공개 내용에 다른 기관의 이행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18. 5. 15.]

가.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설치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관의 장은 공개 내용에 다른 기관의 이행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정서를 송부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2. 재심청구기간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조(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제목개정 2018. 5. 15.]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핵심요약

- 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 공무원의 교육훈련종류
 - 신임교육, 전문교육, 지휘역량교육, 특별교육, 수탁교육, 국외훈련
- 직장교육훈련
- 위탁교육대상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교대제근무, 복무자세, 비상소집
- 소방공무원 근무예절
 - 경례종류
 - 직장예절
-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 제복종류, 제복착용기간, 제복지급기준
 - 정장, 근무장, 기동장
- 고충심사위원회
 - 역할
 - 절차

소방법령 I

발행일 2026년 1월

발행 중앙소방학교

인쇄처 동은디앤피
